

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
□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, 그동안 한시적으로 규정된 조항(기간도과)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·보완하고자 함.

□ 주요골자

1.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·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시에 포함시켜 문제를 사전 예방토록 함.
 -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의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서에 포함시켜,
 -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사용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 - 사용요율도 1000/50·1000/25·1000/10으로 규정되었던 것을 각각 1000/50이상·1000/25이상·1000/10 이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용에 탄력성을 부여함.
2. 완공되지 않은 건설중인 재산(공정이 50%이상 진척된 건물, 기타시설물)에 대하여도 공유재산의 종류에 포함시켜 관리토록 함.

- 완공되지 않고 건설중인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분류되지 않아 재산관리(용도변경·용도폐지 등)를 할 수 없었으나,

- 앞으로는 건설중인 재산(공정이 50%이상 진척된 건물, 기타시설물)에 대해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종류에 포함시켜 관리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신속을 기하고 설치비용 등 중복투자를 방지토록 함.

3. 최저생계비 급여대상인 수급자(구 생활보호대상자)가 공유재산 임대료를 연체할 때에는 연체이자를 감면토록 함.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급여 받은 수급자(구 생활보호법상의 생활보호대상자)가 공유재산을 임대 받아 사용하다가 임대료(재산평가액의 1%적용)를 연체하였을 때 지금까지는 임대료의 15%를 연체이자로 부과하였으나, 이것마저 납부를 하지 못하고 장기 체납되고 있는 경향이 있는바,

- 앞으로는 임대료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급여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체납을 방지함.

4. 공유재산 무단점·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때에는 부과내용을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 함.

- 공유재산을 정당하게 임대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·사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재산관리청이 이를 확인하여 일방적으로 임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,

- 앞으로는 점·사용자에게 변상금 부과이유, 산출내용을 사전에 통지하고,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납부 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 소명토록 하고, 향후에는 임대받아 사용토록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함.

□ 검토의견

가. 법령적합성

-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개정과, 현행 조례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함은 물론 한시적으로 규정된 조항(기간도과)을 삭제하고, 생활보호법 폐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령적합성에는 문제점이 없음.

나. 내용타당성

- 동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·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대상 범위와 사용료 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시에 포함시켜 문제를 사전 예방토록 하였으며,
- 또한, 완공되지 않은 건설중인 재산(공정이 50%이상 진척된 건물 및 기타시설물)에 대하여도 공유재산의 종류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하였고,
- 최저생계비 급여대상인 수급자가 공유재산 임대료의 연체이자를 감면 하였으며,
- 공유재산 무단점·사용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부과내용을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 소명토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.